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2. 16(금) 10:00

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92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2. 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2. 2.

2. 제안이유

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- 나. 유아 숲 체험원 조성·운영(안 제4조).
- 다.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.
- 라.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.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
 - 1)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
 - 2)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, 제8조, 제12조, 제20조, 제22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나. 주요 내용

- 1)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.
- 2) 유아 숲 체험원 조성·운영(안 제4조).
 - 유아숲체험원 조성에 필요한 인력 배치, 운영 관리를 위한 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
 - 금천구 유아숲체험원 현황

구 분	개미 유아숲체험원	베짱이 유아숲체험원
추진근거	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	
위 치	독산3동 산89-7	독산4동 산198-4
개 소 일	2022. 3.	2013. 12. (재정비 준공예정일 2024. 3.)
운영기간	매년 3월 ~ 11월	
운영방식	직영	용역(전문업체 위탁)
운영계획	기간제근로자 채용(유아숲지도사)	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(제안서평가)
주요내용	정기이용기관 및 개인 가족 대상 유아숲 체험시설 프로그램 운영	
소요예산 (2024년)	28,784천원 (전액 시비 배정)	61,260천원 (국비 30,630천원 시비 21,441천원 구비 9,189천원)

- 3)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(안 제5조).
- 4) 협력체계 구축(안 제6조).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유아 숲 교육 공간을 조성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친화적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며 조례 제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어려서부터의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은 인격 형성 및 사회성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바, 관련 예산 확보와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□ 유아교육법

[시행 2023. 9. 27.] [법률 제19737호, 2023. 9. 2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0. 3. 24., 2012. 3. 21.>

1. “유아”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.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3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.
4. 삭제 <2012. 3. 21.>
5. 삭제 <2012. 3. 21.>
6. “방과후 과정”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.

□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1. 12. 16.] [법률 제18260호, 2021. 6. 15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2. 21.>

1. “산림교육”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·탐방·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2. “산림교육전문가”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숲해설가: 국민이 산림문화·휴양(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산림문화·휴양을 말한다)에 관한 활동을 통하여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나. 유아숲지도사: 유아(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(全人的)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다. 숲길등산지도사: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(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·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)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·교육하는 사람

3. “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”이란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산림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인증 등)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할 수 있다.

②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·보급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제5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3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증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④ 제3항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산림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⑤ 제3항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제4항의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2. 21.>

⑧ 인증의 표시방법, 신청절차, 인증기준, 유효기간 연장 및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8. 2. 21.>

제12조(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)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·교육하는 시설(이하 “유아숲체험원”이라 한다)을 조성·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·소재지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: 산림청장

2.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: 시·도지사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(산림청장은 제외한다)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 2. 21.>

④ 시·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2. 21.>

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8. 2. 21.>

제20조(지원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>

1.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

2.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

3.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

4.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
5.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
6.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

제22조(권한·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